담양군의회규칙 제16호

공 포 문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27일

담양군의회의장 장 명 영

붙임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의원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청가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의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회의록 공개, 임시회의록 작성·공개, 방청 제한 고지에 관한 규정,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나. 의원의 청가 중 출산휴가 규정 신설(안 제7조제3항, 제4항)

다. 의장 등의 겸직 제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라.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직무대리 기간 :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한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

마.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운영계획을 수립
  (단,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된 의회는 7월 31일까지 수립)

바. 회의의 비공개 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 「지방자치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 발의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 회의록·임시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안 제45조의2, 제45조의3)

- 회의록 공개 기한 : 임시회 15일, 정례회 30일 이내 홈페이지 공개

아. 방청 제한 고지 규정 신설(안 제79조의2)

- 방청 제한 대상에게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필요 시 문서)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사, 아)

자. 의정활동 상황의 공개 사항 규정(안 제81조의2)

•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 결과, 행정사무감사, 의원발의,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 상황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차.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

3. 규칙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52조(의회규칙), 제83조(회의규칙)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내부규율"을 "내부 규율"로 한다.

제2조 중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를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의석배정)"을 "(의석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의원"을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선거"를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로, "지역선거구 등"을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최초 집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최초 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제4조 본문 중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임시회에 있어서"를 "임시회"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임기초"를 "임기 초"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주민의

권익신장"을 "담양군민의 권익 신장"으로, "주민앞"을 "담양군민 앞"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을 "5일 이내의 청가와 출산휴가는"으로, "것은 의회"를 "청가는 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때에는 다시"를 "때는 다시"로, "때에는 그날"을 "때는 그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이유없"을 "이유 없"으로,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를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로, "해당의원"을 "해당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면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의 마지막 날이 출산일로부터 1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0일) 이내에 있어

야 하며, 3회(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를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로, "때에는 최다득표자"를 "때는 최다득표자"로, "2인이상이면"을 "2인 이상이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선투표결"을 "결선투표 결"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장 등의 겸직제한) ①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은 상호 간 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1항 중 "선거일 보다 먼저인 경우의"를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장 또는 부의장의"를 "의장과 부의장의"로,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을 "폐회 중에 만료된 때는 그 의장과"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을 "의장과 부의장을"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집회후"를 "집회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를 "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개의시"를 "개의 시"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개의시"를 "개의 시"로, "법 제72조 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으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수"를 "때는 유회를 선포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언을 할"을 "발언할"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휴회중이라도"를 "휴회 중이라도"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의사 일정"을 "의사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않을때에"를 "않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단 중 "본회의"를 "본회"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를 "관하여는 토론하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의사일정의 미료안건)"을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관하여"로, "못한 때에"를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매 회기시작일"을 "매회기 시작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회기중"을 각각 "회기 중"으로 하며, 같은 호 중 "안될"을 "안 될"로, "있을때"를 "있을 때"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때는 의회운영위원회"로, "때에는 의장"을 "때는 의장"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대하여는 본회의"를 "관해서는 본회"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심사기간"을 "심사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유없이 그 기간내"를 "이유 없이 그 기간 내"로, "때에는 의장은"을 "때는 의장이"로 한다.

제20조의4 단서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찬성없"을 "찬성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를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때의찬성자 3분의 2이상"을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대하여는 제안자"를 "대해서는 제안자"로, "대하여는 의결"을 "대해서는 의결"로, "그 중"을 "그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때는 관계 공무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정 할"을 "인정할"로 한다.

제25조의2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26조 중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를 "정리가 필요할 때"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언통지"를 "발언 통지"로, "통지를 한"을 "통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처리 할"을 "처리할"로, "그외"를 "그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발언통지"를 "발언 통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등단하여"를 "등단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때에는"을 각각 "때는"으로 한다.

제30조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의제외 발언의 금지)"를 "(의제 외 발언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발언회수의 제한)"을 "(발언 횟수의 제한)"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발언시간의 제한)"을 "(발언 시간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발언시간"을 "발언 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게재 할"을 "게재할"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5인 이내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청

원 및 주요 군정 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1항 단서 중 "의견표명"을 "의견 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일전"을 "1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다만,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 하거"를 "다만, 발언자가 발언 시간을 초과하거"로, "내지"를 "또는"으로, "회의의질서를 위반할 때에"를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로 한다.

제34조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올린안건에 대하여"를 "올린 안건에 관하여"로, "미리반대"를 "미리 반대"로, "통지하여야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참가 할때에"를 "참가할 때"로, "돌아 갈"을 "돌아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인이상"을 "2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토론을 하지"를 "토론하지"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때에는"을 각각 "때는"으로 한다.

제39조 본문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수없다"를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참가할수"를 "참가할 수"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을 "때는 의장이 의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회의"를 "본회"로, "때에는"을 "때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때에는 가결되 었음"을 "때는 가결되었음"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을 "때는 의장은 의원 중"으로, "위원의참석하"를 "위원의 참석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각각 "때는"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수정안의 표결순서)"를 "(수정안의 표결 순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정안 보다"를 "수정안보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각각 "때는"으로 한다.

제44조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한다"를 "기재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의·회의중지·산회"를 "개의·회의 중지·산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출석공무원"을 "출석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서면질문"을 "서면 질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언내용"을 "발언 내용"으로 한다.

7. 제반 보고 사항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임시회는 회기가 끝난 날부터 15일(정례회는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45조의3(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회기동안"을 "회기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존연한"을 "보존 연한"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 의장"을 "한,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멸 되었다고"를 "소멸했다고"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본회의중 의원회 개회)"를 "(본회의 중 의원회 개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본회의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51조 중 "1인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거쳐표결한다"를 "거쳐 표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득이한경우에는"을 "부득이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 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를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때는 관계 공무

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동일의제"를 "동일 의제"로, "시간등에 제한없"을 "시간 등에 제한 없"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 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3분의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전단 중 "수있다"를 "수 있다"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문지식을 요하는"을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으로, "있는자 등(이하 "진술인"이라한다)"을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열때에"를 "열 때"로, "참고사항을기재한"을 "참고사항을 기재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수있다"를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여비 지급 기준은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제1항 중 "안건의 심사를 마친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를 "안건 심사를 마쳤을 때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로, "보고 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의 의제가 되기 전"을 "제출되었을 때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긴급할 때는 배부"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른위원"을 "다른 위원"으로, "하게할"을 "하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개의·회의중지"를 "개의·회의 중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표결 수

제60조의 제목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를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회의록"을 "회의록이나"로, "열람의"를 "열람"으로, "때에는"을 "때,"로, "없는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제안설명"을 "시정연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로, "끝난후"를 "끝난 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 심사기간"을 "때는 심사기간"으로, "이유없이 그 기간내"를 "이유 없이 그 기간 내"로, "때에는 이"를 "때는 이"로 한다.

제62조 중 "재적의원3분의 1이상"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을 "있을 때는 예산의"로 한다.

제64조 중 "발견 된때에"를 "발견된 때"로, "요구할수"를 "요구할 수"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후그"를 "후, 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65조의2 중 "결산심의"를 "결산 심의"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군수등의 출석요구)"를 "(군수 등의 출석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관계공무원은"을 "관계 공무원은"으로, "관계공무원의"를 "관계 공무원의"로, "관계공무원으로"를 "관계 공무원으로"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특정분야"를 "특정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일괄질문 ·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을 "보충 질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원할 경우"를 "원할 경우"로, "보충질문"을 "보충 질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질문내용이 질문의원간"을 "질문 내용이 질문 의원 간"으로, "사전"을 "사전에"로, "질문시간"을 "군정질문"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군수에대한 서면 질문)"을 "(군수에 대한 서면 질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군수등의 발언)"을 "(군수 등의 발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할때에"를 "할 때"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

과 같이 한다.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제69조제2항 단서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기전"을 "있기 전"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의원의자격심사"를 "의원의 자격심사"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이하"를 "윤리특별위원회(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일내"를 "기일 내"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기일내"를 "기일 내"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을 "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은 때에"를 "있을 때"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할수"를 "할 수"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급히필요한"을 "급히 필요한"으로, "요구 할"을 "요구할"로 한다.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해 할"을 "방해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료·문서등의 인쇄물배포"를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휴대반입"을 "휴대 반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행사등"을 "행사 등"으로 한다.

제75조 중 "의원·관계공무원"을 "의원, 관계 공무원,"으로, "필요한자

와"를 "필요한 사람과"로, "자 외"를 "사람 외"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구분 한다"를 "구분한다"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방청권의 교부및 기재)"를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 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엔"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 받"을 "교부받"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있는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관계직원"을 "관계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80조제4호 중 "흡연행위"를 "흡연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열독행위"를 "열독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녹음·녹화·촬영행위"를 "녹음·녹화·촬영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회의장내"를 "회의장 내"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소란등"을 "소란 등"으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녹음·녹화등)"을 "(녹음·녹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장 또는위원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에서녹음·녹

화·촬영 및 중개방송"을 "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녹음등"을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으로, "자는 매회기초"를 "사람은 매회기 초"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위원회"를 "다만,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장내"를 "회의장 내"로, "제한없"을 "제한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녹음 등을 하는"을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하는"으로 한다.

제8장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의정활동 상황의 공개) ① 의장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 출석률, 의원발의, 군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82조제1항 중 "징계대상의원"을 "징계대상 의원"으로, "때에는"을 "때는"으로, "회부 한다"를 "회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회부 한다"를 "회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1이상"을 "1 이상"으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95조에 따라"로,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를 "때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과"를 "제1항,"으로,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징계의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을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82조 제1항과"를 "제82조제1항,"으로, "알게된"을 "알게 된"으로, "받은날 또는 동조 제3항"을 "받은 날 또는 제82조제3항"으로, "휴회기간"을 "휴회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을 "제82조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82조 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동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을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날,징계대상자"를 "날, 징계대상자"로,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를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폐회기간중"을 "폐회 기간중"으로, "의회의집회일"을 "의회의 집회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변명을 하게"를 "변명하게"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때에는 지체없"을 "때는 지체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담양군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내부 규율 ----------
제2조(등록)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등록) --------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등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의석 배정) ①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때는 ----------. ②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
<신 설>	제3조의2(최초 집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담양군의회(이하 "의

	회"라 한다)의 최초 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제4조(개회식)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고 기타 임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개회식) 의회---------- ----------. ---- 전국동시지방선거 ---------- ---- 임시회---------- ---------- ----------.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조(선서) ---- 임기 초------ ----------. --- ---------- 담양군민의 권익 신장---------- ---------- ---------- -- 담양군민 앞---------- ---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 ---------- --- 때는 ---------- ---------- ----------.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② ----- 5일 이내의 청가와 출산휴가는 ---------- ------ 청가는 의회---------- ------.
<신 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면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의 마지막 날이 출산일로부터 1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0일) 이내에 있어야 하며, 3회(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 ⑤ ---------- ---------- 때는 다시 ---------- ---------- ------- 때는 그날 ------- ----------.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 때는 ------- ---------- ----------.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 이유 없----- ---------- 2 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 ---------- 해당 의원------ ----------.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⑧ ---------- ---------- 때는 ------- ----------.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	② ----------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 ---------- 때는 최다득표자---------- ----------

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2인 이상이면 ------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 결선투표 결------- ------- 때는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의장 등의 겸직제한) ①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은 상호 간 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 ----.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 의장과 부의장의 ------- 폐회중에 만료된 때는 그 의장과 -- ---------- 의장과 부의장을 ----------

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
<신 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생 략)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생 략)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 않고 ----------.
제12조(회기) ① (생 략)	제12조(회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 집회 후 ----------.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 날----------.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④ ---------- 때는 ----------.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3조(개의) ---------- ---------- 개의 시----- ---. ----------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개의 시---------- ------- 법 제72조제1항----- ---------- 때는 유회를 선포할 수 ---. ③ ---------- ---------- ---------- 발언할 --------.
제15조(휴회) ① (생 략) ② 휴회중이라도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5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휴회 중이라도 ---------- ---------- ---------- ---------- ---------- 때는 ----------.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 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 ---------- -------- 의사일정--------- ----------.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 않을 때---------.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③ ---------- 때는 ----------.
<신 설>	제16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 본회---------- 때는 ----------. ----------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관하여는 토론 하지 ----------.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 관하여 ---------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 ----------.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생 략)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매 회기시작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 매 회기 시작일 ---------- ----------. ---------- ---------- --------.
③ 제2항에서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당해 회기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때	2. ---------- 회 기 중---------- ---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당해 회기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3. ---------- 회기 중----------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 있을 때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 ---------- 때는 - ---------- ---------- ---------- ---------- ---------- ----------. ------ ---------- ----------.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② ---------- ---------- ------- 때는 의회운영위원회 ---------- ---------- --- 때는 의장---------- ----------.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 ---------- ---------- 관해서는 본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3(심사기간) ① ------ 심사 기간---------- ----------.

② 전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 이유 없이 그 기간 내---------- ------- 때는 의장이 ------- ---------- ---------- ---.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 ---------- ----------. - ---------- ----------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 ----------.
제22조(수정동의) ① (생 략)	제22조(수정동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② ---------- --- 찬성 없----------.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③ ------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	제24조(번안) ---------- ---------- ----------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 ----------

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 ---------- ---------- ---------- ---------- ----------.
제25조(안건심의) ① 본회의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안건심의) ① --------- ---------- ---------- ---------- --. ---------- ---------- 대해서는 제안자---------- ---------- ---------- --- 대해서는 의결---------- ------- 그중---------- --------.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 ---------- ---- 때는 관계 공무원에게 -- ---------- -----.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③ ---------- 인정할 - ---------- ----------.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	제25조의2(재회부) ---------- ----------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때는 ----------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의안의 정리) ---------- 정리가 필요할 때----------
제28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발언의 허가) ① ---------- 때는 ----------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	② 발언 통지---------- 통지한 ----------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며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③ ---------- 처리할 ---------- 그 외----------

④ 제1항의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 발언 통지---------- ----------.
제29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발언의 장소) ① ------ 등단하여야 ---------- ---------- -- 때는 ---------- ---.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때는 ---------- ----------.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서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0조(발언의 계속) --------- ---------- ---------- ---------- ------- 때는 ---------- ---------- ----------.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 ---------- ---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 수	② ---------- ---------- 때는 ---------- ----------

있다.	---.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생 략)	제32조(발언 횟수의 제한) (현행과 같음)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 할 수 있다.	제33조(발언 시간의 제한) ① ---- 발언 시간----------. ---------- ② ---------- 대해서--- -------- 게재할 --------.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5인이내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군정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5인 이내의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군정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 의견 표명----------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시 1일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 의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 하거나 타인을 비방 내지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등 회의의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즉각 중지시킬 수 있다. [조 신설 2010.9.30.]	----------. ② ---------- 1일 전---------- ---. ③ ---------- ----------. 다만, 발언자가 발언 시간을 초과하거---------- 또는 ---------- ----------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 ----------. ----------
제3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보충보고) ---------- ---------- ---------- 때는 - ----------.
제35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35조(토론의 통지) ① ------- -- 올린 안건에 관하여 ------ ---------- 미리 반대 --- ----------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 할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 갈 수 없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 참가할 때---------- ---------- ---- 돌아갈 -------.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② ---------- ---------- 때는 ---------- ----------.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 때는 ---------- --.
② 의원 2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② -- 2인 이상---------- ---------- ---------- -----. ---------- ---------- --------.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③ ---------- 토론하지 ---------- ----------.
제38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제38조(표결의 선포) ① ------ 때는 ---------- ----------.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② ---------- 때는 - ----------

발언할 수 없다.	----------.
제3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수 있다.	제39조(표결의 참가) ---- 때는 ---------- ---------- 수 없다. ---------- ---------- 때는 ---------- --- 참가할 수 --.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41조(표결방법) ① ---- 때는 의장이 의원에게 ---------- ---------- ------.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 --- 본회---------- 때는 ---------- ------.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 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 ---------- ---------- --- 때는 가결되었음-------- ---------. ---------- -- 때는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참석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제42조(투표절차) ① ---- 때는 ----------. ② ----- 때는 의장은 의원 중 ---------- 위원의 참석하----------. ③ ---------- --- 때는 ----------. ---------- ------- 때는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	제43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① ---------- -------- 때는 ----------

를 정한다. 1. (생 략)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1. (현행과 같음) 2. ---------- 수정안보다 ----------. 3. ---------- 때는 ---------- ----------. ② ---------- 때는 - ----------.
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4조(표결결과 선포) -------- --- 때는 ---------- ------.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생 략)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4. (생 략)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생 략) 7. 제반보고사항 8. ~ 11. (생 략)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14. (생 략)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 ---------- 기재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개의·회의 중지·산회---- -- 3.·4. (현행과 같음) 5. 출석 공무원--------- 6. (현행과 같음) 7. 제반 보고 사항 8. ~ 11. (현행과 같음) 12. 서면 질문------ 13.·14. (현행과 같음) ② ----------

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발언 내용 ----------.
<신 설>	제45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임시회는 회기가 끝난 날부터 15일(정례회는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 설>	제45조의3(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 회기 동안----------.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② ---------- 보존 연한----------.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생 략)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② ---------- ----------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때는 --------- ---------- ---------.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생 략)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 ---- 때는 ---------- --- 한, 의장---------- --- 아니 된다. ③ ---------- ---------- ---------- -- 아니 된다. ④ ---------- ---------- 아니 된다. --- ---------- ---------- 소멸했다고 ---------- ----------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본회의중 의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	제50조(본회의 중 의원회 개회) - ---- 본회의 ---------- ----------

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 ---------- ---------- --- 1인 이상---------- -----.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의원을 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 ---------- ---------- ---------- ---------- ------ 거쳐 표결한다. ----- ---------- ---------- 부득이한 경우에는 ---------- ---------- ---.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 ----------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	③ ----------

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때는 관계 공무원----------.
제53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53조(위원의 발언) ① ---------- 동일 의제---------- 시간 등에 제한 없----------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 3분의 1 이상---------- --.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 때는 ----------.
제55조의2(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제55조의2(연석회의) ① ---------- 수 있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	제56조(공청회) ① ----------

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자 등(이하 "진술인"이라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 ---------- ----------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열 때-- ---------- -------- 참고사항을 기재한 ----------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 ---------- ---------- ----------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이 경우, 여비지급 기준은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 따라 ---------- ---------- 수 있다. 이 경우, 여비 지급 기준은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때에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안건 심사를 마쳤을 때는

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의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 보고하여야 ---. ② ---------- 적어야 --------. ③ ---------- 제출되었을 때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 --- 긴급할 때는 배부----------.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 ---------- ---------- ---------- 때는 ---------- ----------. ② ------ 다른 위원-------- ---------- -- 하게 할 ----. ③ ---------- -- 때는 ---------- -----.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 ----------. 1. 개의·회의 중지---------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표결수	8. 표결 수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 ---------- 회의록이나 ---- ---------- 열람 ---------- -- 때, ---------- -------- 없으면 ---------- --------. ---------- ----------.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며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 ---------- 때는 -------- ---------- 시정연설--- ---------- ---------- ---------- ----------.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회"--------- ---------- 끝난 후 -- ----------.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	③ ----------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때는 심사기간---------- --- 이유 없이 그 기간 내---------- 때는 이---------- -----.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제63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63조(예산안의 의결) ① ---------- 있을 때는 예산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 된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수 있다.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 -------- 발견된 때---------- ---------- ------ 요구할 수 ---.
제65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 ---------- 때는 ---------- ----------.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한 후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은 결산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65조의2(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심사)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의 심사는 제61조와 제65조의 예산안 심의 및 결산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한다.

제66조(군수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 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

② ---------- 후, 그 ----------.

③ ---------- 때는 ----------.

제65조의2(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심사) ---------- 결산 심의 ----------.

제6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 ---------- 1 이상----------.

② ---------- 관계 공무원 ----------.

③ ---------- 때는 ---------- 관계 공무원은 ----------

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관계 공무원의 ---------- ---------- ---------- 관계 공무원으로 ---------- ----------.
제66조의2(군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2(군정에 관한 질문) ① ------ 회기 중 ---------- ---------- 특정 분야---------- ----------.
② 군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원할경우 일문일답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의 범위안에서 질문한다.	② -------- 일괄질문·일괄답변 --------- 보충 질문---------. ---------- 원할 경우 ---------- --- 보충 질문---------- ---------- 범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질문요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미리 접수하여 질문내용이 질문의원간에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한 후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④ ---------- ---------- ---------- 질문 내용이 질문 의원 간------ ---------- 사전에 -------- ---- 군정질문 ---------- ----------

야 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군수에대한 서면 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 질문) ① ---------- -- 때는 ---------- ---------- 지체 없 ----------.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10일 이내---------- --------. -- 기간 내------- ------- 때는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군수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군수 등의 발언) ------ 관계 공무원---------- ---------- 할 때-------- ---------- -------.
제69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사직) ① ---------- --- 때는 ---------- ---------- -----.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 폐회 중----- ----------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 ---------- ---- 있기 전---------- ---.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 의원의 자격심사 -------- 때는 ------- ---------- 윤리특별위원회(이하 ---------- ---------- ----------. ② ---------- ---------- 기일내---------- ---- 때는 ---------- ---------- --------.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 때는 ---------- ----. ② ---------- ----------. --- -- 기일 내----------

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 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④ ---------- 있을 때- ---------- ----------.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 때는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수 있다.	③ ---------- ---------- ---------- 할 수 --.
제73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 할 수 있다.	제73조(경호) ① ---------- ---------- 때는 --- ---------- ---------- ---------- ---------- ------- 급히 필요한 ------- ---------- ---------- 요구할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 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2. ---------- 방해할 ---------- --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등의 인쇄물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3. ----------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5. ---------- 휴대 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6. ---------- 행사 등 ----------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 의원, 관계 공무원, ---------- 필요한 사람과 ---------- 사람 외----------.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 한다.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 구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방청권의 교부및 기재) ①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방청권은 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 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① ---------- 의회사무과장----------.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② ---------- ---------- ---------- 때, ---------- ---.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③ ---------- ---------- ---------- ---------- 교부받----------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4. ---------- ---------- -------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② ---------- 때는 ------- ----- 관계 직원---------- ----------

수 있다.	-----.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 ---------- ---------- ----- 때는 ---------- -- 사람---------- --.
<신 설>	제79조의2(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8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4. ---------- 흡연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5. ---------- 열독 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6. ---------- 녹음·녹화·촬영 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회의장 내 ---------- ---------- ----------
8.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8. --- 소란 등 ----------

방해하는 행위	----------
제81조(녹음·녹화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 한다)에서녹음·녹화·촬영 및 중개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제81조(녹음·녹화 등) ① ---------- ---------- 의장 또는 위원장-- ---------- ---------- -------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② 제1항의 녹음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초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 사람은 매회기 초-------- -----. 다만, 위원회-------- ---------- ---------- --.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③ ---------- ---------- 회의장 내------ ---------- 제한 없----------.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하는 --- ----------.
<신 설>	제81조의2(의정활동 상황의 공개) ① 의장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 출석률, 의원발의, 군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징계대상 의원---------- ---------- 때는 ---------- ---------- 회부한다. ② ---------- ---------- 때는 ----------. ----------

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한다.	---------- --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 때는 ---------- --- 1 이상---------- ----------. ---- 법 제95조에 따라 ---------- ---------- 때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 ---------.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 때는 ---------- ---.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⑤ 제1항, ---------- ---------- ---------- ------ 경우에는 ---------- ----------.
제83조(징계의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 ---------- ---------- ---------- 알

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게 된 ---------- 받은 날 또는 제82조제3항---------- 휴회 기간----------. 제82조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
②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82조제2항----------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날, 징계대상자----------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 폐회 기간중---------- 의회의 집회일----------.
제85조(심문 및 변경) ① (생 략)	제85조(심문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변명하게 ----------.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 때는 지체 없---------- ---------- --.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② ---------- 때는 ------- ---------- --.